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손성훈

전화 055-814-4302 / 팩스 0502-193-7477

보도자료

2024. 1. 31.(수)

제목

前 ○○군수의 관급공사 자재납품 비리 등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(지청장 이수창)은 ○○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**前 ○○군수, 자재납품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, 군청 공무원 및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(검찰 인지 6명, 사경 송치 1명)을 불구속 기소**하였습니다.

● 특히, 수사 과정에서 **前 ○○군수 A가 △ 군수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지인인 지역 자재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위 사업 관련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업체와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고, △ 업체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천설계 기준에 위배됨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조절 시설인 '가동보'의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도록 지시하여 ○○군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**되었고,

△ 이와 별도로 지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'○○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'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,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.

●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부정부패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.

1

사건 개요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직업	공소사실 요지	검찰 인지	처분
1	A (73세)	前 ○○군수	'19. 7.~20. 5.경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,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인 D가 운영하는 업체들과 함께 약 24억 원 상당의 관급자재(가동보 20억 원, 호안블록 4억 원)* 공급계약 체결을 지시하고, 부당하게 과잉공사를 하게 하여 ○○군에 6억 원의 손해를 가함 [직권남용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(배임)]	검찰 인지	구속 기소
			'22. 1. 18.경 C로부터 아들을 ○○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,000만 원 수수 [특가법위반(뇌물)]	경찰 송치	
2	B (47세)	군청 공무원	'20. 1. 17.경 A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D 운영 업체의 '가동보'가 대체 가능함에도 대체 불가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 작성 [허위공문서작성]	검찰 인지	불구속 기소
3	C (67세)	A 지인	'22. 1. 18.경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현금 3,000만 원 교부 [뇌물공여]	경찰 송치	
4	D (65세)	자재 납품 업체 대표	'20. 6. 3.경 하청업체 대표 E와 공모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 '가동보' 납품 관련, 사실은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E로부터 구매해 군청에 납품함에도, 마치 특허 제품을 자신의 업체가 직접 생산·납품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○○군으로부터 약 20억 원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(사기)]	검찰 인지	구속 기소
			'20. 5.경 ○○군청 담당 공무원 F와 공모하여, 위 생태하천 조성사업 '호안블록' 납품 관련, 사전에 특정규격·색상 등 입찰정보 제공받고 그 중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, '경쟁입찰' 절차를 가장해 약 4억 원의 호안블록 공급계약 체결 [입찰방해]		
5	E (45세)	하청업체 대표	D의 공범으로 위 공소사실 요지와 동일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(사기)]	검찰 인지	불구속 기소
6	F (44세)	군청 공무원	D의 공범으로 위 공소사실 요지와 동일 [입찰방해]		
7	G (63세)	D 운영 업체 직원	'23. 9.~10.경 D가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폰을 교부하고, 은신처인 원룸 등을 제공하여 도피 조력 [범인도피]	불구속 기소	
8	H (51세)	D 운영 업체 직원	'23. 9.~10.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차명폰 개설 후 제공 등으로 도피 조력 [범인도피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		
9	I (66세)	무직	'23. 10.경 G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 [전기통신사업법위반]		

* '가동보'는 수위조절 수문, '호안블록'은 하천 홍수방지 제방을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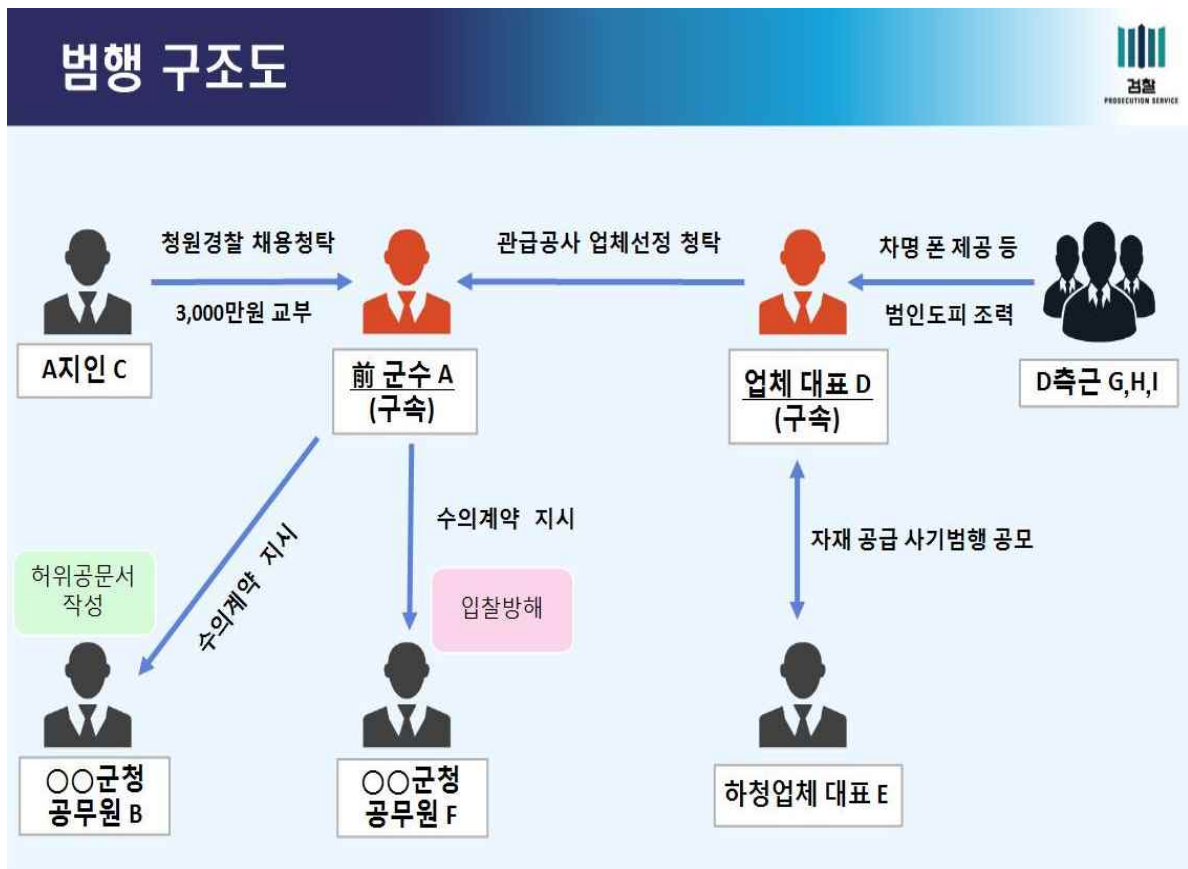
☞ D는 특허제품인 '어도형 전도식 수문'(어류 이동 가능) 납품을 가장하여 '일반 전도식 수문'(어류 이동 불가)을 납품[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(사기) 관련]

② 주요 수사경과

- '22. 12. 16. 사경, 前 ○○군수 A의 특가법위반(뇌물) 사건 송치
- '23. 3. 감사원, A에 대한 직권남용 등 검찰 수사의뢰
- '23. 4. ○○군청 압수수색 및 계좌·통신영장 등 집행
- '23. 4. ~ 9. 담당 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사건관계인 조사
- '23. 9. 자재납품 업체 대표 D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및 D 도주
- '23. 12. D 체포 및 구속
- '23. 12. 22. D 구속 기소 및 E, F, G, H 등 4명 불구속 기소
- '24. 1. 12. A 구속
- '24. 1. 31. A 구속 기소 및 B, C, I 등 3명 불구속 기소

※ 같은 날, 사경이 송치한 A의 특가법위반(뇌물) 사건 병합기소

2 범행구조 및 수법



[범행 구조]

-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지인 운영의 지역 업체에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를 몰아주어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과정에서,
 - 지방자치단체에 수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고,
 - 지역 업체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허위납품과 과잉공사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사안입니다.

※ 지자체장은 다른 지인으로부터 공직 취업을 청탁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도 수수

[A 관련 범행]

- 前 ○○군수 A는 지인인 지역업체 대표 D로부터 ○○군 위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 관련, 관급자재인 ‘가동보’(약 20억 원) 및 ‘호안블록’(약 4억 원)의 납품 청탁을 받고,
 -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에도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인 B, F 등에게 D 운영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및 과잉공사를 지시하였습니다.
 - A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B, F 등 ○○군청 공무원들은 D 운영 업체의 ‘가동보’가 대체가능함에도 대체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거나, D 측에 ‘호안블록’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였습니다.

※ ① A의 수의계약 체결 지시로 인해, ‘가동보’는 수의계약 요건인 ‘대체불가능’한 제품이 아닌 ‘대체가능’한 제품임에도, B는 ‘대체불가능’의 허위보고서 작성

② ‘호안블록’ 납품 관련, D 운영 업체는 사전에 특정규격·색상 등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타사의 동일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, ‘경쟁입찰’ 절차를 가장해 사실상 단독으로 호안블록 공급계약 체결

- 또한 A는 ○○군청 공무원들의 가동보 상향 불가능 보고에도 불구하고 가동보의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게 하여, 그 만큼의 과잉공사로 ○○군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.

※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상 상한인 가동보 높이(1.39m)를 근거 없이 상향(2m)하게 하여 과잉공사 지시(약 6억 원의 추가비용 발생)

- 한편, A는 C로부터 그의 아들을 ○○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,00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.

[관급자재 납품업자들의 범행]

- A의 도움으로 자재납품 업체로 선정된 D는 관급자재로 납품하기로 한 '특허제품'인 가동보를 직접 생산·납품할 능력이 없어 하청업체 대표인 E와 공모하여, 특허제품이 아닌 '일반제품'인 가동보를 ○○군에 납품함으로써 납품대금 약 2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.

[기타 범행]

- G, H, I는 D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 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명폰 제공 등의 방법으로 D의 도피를 조력하였습니다.

3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① 수사 의의

- 공무원·지역유력인사 등이 결탁한 '지역토착형 부정부패' 엄단
 - 본건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지역 개발사업에 관하여 군수, 공무원 등 지자체, 경제적·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유력인사가 결탁하여 법령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자재납품을 몰아주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전형적인 '지역토착형 부정부패' 사건입니다.
 -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후 범행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 ○○군청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, 그 과정에서 군수와 지역인사의 유착관계, 군수의 위법·부당한 지시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범행가담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또한, 추가 수사 과정에서 군수의 도움으로 납품 업체로 선정된 자재업자가 납품할 공사 자재를 특허제품인 것처럼 ○○군을 기망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사실도 확인하여 엄단하였습니다.

● 끈질긴 추적을 통한 도주 사범의 검거 및 조력자 엄단

-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망간 D에 대해 약 3개월에 걸쳐 다수의 압수·통신영장을 집행하는 등 끈질기게 추적하여, 검거하였습니다.
- 또한 D의 도주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, D 운영 업체의 직원들이 차명폰 및 은신처 제공 등을 통해 D의 도주를 조력한 사실도 확인하여 엄벌하였습니다.

● '지자체 인사비리' 규명

- 검찰은 前 군수 A가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인사비리를 적발하여 뇌물 제공 경위, 사후적 뇌물 반환 과정 등을 밝힘으로써 매관매직의 실체를 규명하였습니다.

② 향후 계획

-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. ☑